##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74

발의연월일: 2022. 8. 4.

발 의 자:서영석·노웅래·김홍걸

김병욱 • 문진석 • 최혜영

이용빈 · 고민정 · 도종환

조승래 · 강선우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검사 결과에 따른 조기개입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조기개입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기발견 이후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안

정된 가정생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2, 안 제12조 신 설 등).

### 법률 제 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를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 공 및 연계, 상담지원 등

제12조제1항 중 "실시하는 경우"를 "실시하여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경우"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 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 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지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
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무)
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의 <u>조기발견을 위한 홍</u>	3 <u>조기발견 및 조기개</u>
<u>보</u>	입대책의 강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	
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2. ~ 6. (생략) ② ~ ⑤ (생 략)

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 강보험법 | 제52조, 「의료급여 | 법」 제14조 및 「모자보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 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 진 ·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 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등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실시하여 추적검사 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경우-------실시하 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 하여 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 원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 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 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1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영유

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
	<u>니한다.</u>
<u>&lt;신 설&gt;</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장애
	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
	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
	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
	족에게 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
	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
	을 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 절
	차,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지
	원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지
	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u>⑤</u> (현행과 같음)